

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

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- 제정 2005·11·8 훈령 제159호
- 개정 2007·7·2 훈령 제177호
- 개정 2008·8·1 훈령 제181호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- 일부개정 2013·10·7 훈령 제219호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- 일부개정 2014·6·17 훈령 제235호
(제명개정)
- 일부개정 2017·10·11 훈령 제264호
- 일부개정 2019·1·1 훈령 제274호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- 일부개정 2021·3·4 훈령 제293호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- 일부개정 2022·4·6 훈령 제307호
- 일부개정 2023·3·6 훈령 제315호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- 일부개정 2023·8·28 훈령 제321호
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
규정 등 3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)
- 일부개정 2024·7·1 훈령 제328호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- 전부개정 2024·12·20 훈령 제33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소속 직원”이란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이천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,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른 청원경찰, 「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,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시의회 의원을 말한다.
3. “보육”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의 명칭은 “함초롱 어린이집”이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38-52(중리동)에 둔다.

제4조(운영) ① 어린이집은 이천시청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운영하거나,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

④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,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⑤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:30부터 19: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연장 보육 시간은 19:30부터 23:00까지로 한다.

제5조(운영 위탁의 취소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
2.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
3.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4. 법 제36조 및 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5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
6.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에 따른 금지

행위를 한 경우

- 7.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8.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9.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
제6조(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- 3. 영유아의 건강·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
- 4.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
- 5. 보육 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7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
- 8.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9.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10.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시의 직장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 중 보육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및 시의 직장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

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보육교사 대표가 된다.

제11조(입소대상 및 자격) ①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은 소속 직원의 영유아로 한다.

② 입소 대상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로 하며,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.

1. 한부모 또는 장애인 직원 자녀,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
2. 다자녀(3명 이상) 또는 영유아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
3. 시 소속 부부 직원의 자녀
4. 맞벌이 부부 직원의 자녀
5. 그 밖의 직원의 자녀

③ 어린이집에 증원 또는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아동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12조(입소) ①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승인 결정통지서를 소속

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퇴소)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.

1. 소속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한 때
2. 소속 직원이 퇴소를 원할 때
3. 보육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
4.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퇴소를 결정한 때

제14조(보육료 등의 납부) 국가 등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이외의 비용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며, 보육료 등의 수납액은 어린이집 운영에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5조(비용부담)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손해배상)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린이집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부칙 <2024·12·20 훈령 제334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본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승인 결정통지서

아 동	성 명		생년월일		
	성 별		연 령 (개월 수)	만 세(개월)	
	주 소				
보호자	성 명		소속부서		
	직 급		전화번호	사무실	
				휴대폰	
결정사항		입소예정월			
<p>상기 아동을 「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4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40px;">이 천 시 장</p>					